

부산동부권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임주자모집공고일 2026.08.10.)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임대주택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기창로102번길 41 (원룸형)

- ※ 금회 공고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당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청약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문 p.4~5 참고)
-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군 및 주택유형의 **2배수**를 모집합니다.
- ※ 계약안내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증 후 별도 안내합니다.
- ※ 예비자의 경우 입주자의 해약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계약체결(개별통보)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안내 받은 계약일시에 불참시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후순위 예비자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2. 모집세대

유 형	계	입주자	예비입주자
1형 (전용면적 20㎡이하)	24	8	16

3.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대상주택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비 고
소재지	호수	전용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금정구 기창로 102번길 41 (원룸형)	201	18.85	4.12	22.97	3,468,000	346,000	3,122,000	289,000	공가
	202	18.64	4.07	22.71	3,468,000	346,000	3,122,000	289,000	공가
	203	19.75	4.31	24.06	3,641,000	364,000	3,277,000	303,450	공가
	204	18.14	3.96	22.10	3,468,000	346,000	3,122,000	289,000	계약
	205	19.76	4.31	24.07	3,641,000	364,000	3,277,000	303,450	공가
	301	18.85	4.12	22.97	3,468,000	346,000	3,122,000	289,000	공가
	302	18.64	4.07	22.71	3,468,000	346,000	3,122,000	289,000	공가
	303	19.75	4.31	24.06	3,641,000	364,000	3,277,000	303,450	계약
	304	18.14	3.96	22.10	3,468,000	346,000	3,122,000	289,000	공가
	305	19.76	4.31	24.07	3,641,000	364,000	3,277,000	303,450	공가

- 주택유형 : 1형(전용면적 20㎡이하)
- 입주자의 경우 순번을 정하여 선정한 후, 순번에 따라 계약시 희망하는 주택(동호)을 선택하게 됩니다.
- 공가세대는 예비대기자 선정 후 즉시 계약 가능하며 그 외 주택은 **해약발생 시** 예비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유형별로 예비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입주자 미계약, 공가(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주거공용부분과 그 밖의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입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 실행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주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 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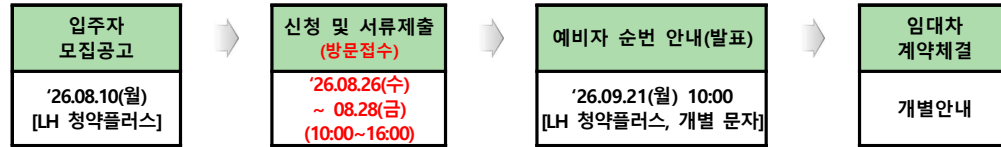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무주택 등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2026.08.26(수) 10:00 ~ 2026.08.28(금)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접수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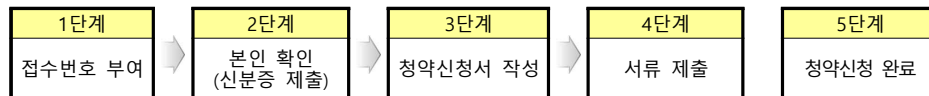
※ 본 모집은 선착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 순번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장소

일정	※ 10시 이전 :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접수 순서를 결정 *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접수 진행 ※ 10시 이후 : 도착 순서대로 순번부여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접수가 끝난 후 순번대로 청약접수
장소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마이홈센터)

• 신청 절차



•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당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청약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접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시 주택까지만 선택한 후 자격검증 이후 예비자순번에 따라 주택(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주택개방은 별도 통보한 기간에 개방할 예정으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주택 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앞 순번에서 계약 체결한 주택은 계약 체결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여러 주택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8.10)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기간 동안(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강산)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1통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예시) 450815-1234567 (O) / 450815-1***** (X) •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참고)	• 대 상 자 :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 동의 방법 : 첨부된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대상자 전원이 서명 및 필수항목 동의 체크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 기타 서류 (대리인 신청 및 계약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 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헌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료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헌인서) 제출	의료기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행정복지센터

7. 무주택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되어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차 계약기간은 집주인-LH 간 계약기간에 따라 변경(2년 미만)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입주자로 선정 당시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의 상호 전환은 불가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10%)과 잔금(90%)으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당해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신청자격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세대원 전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 금지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 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주택여건	■ 주택 특성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료 외에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위한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빌트인 가구, 가전제품 등은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물품반출 또는 처분이 불가합니다. 또한 퇴거 시 전품목의 훼손 및 작동상태에 대한 점검 후 보수 필요 시 그 비용이 청구되오니 입주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일반사항 - 임대주택의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 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배치구조 또는 인근 주택, 시설물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주택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와 보도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소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배치여건상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결로예방, 실내의 청결, 빌트인 가전·가구 등에 대해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발생 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이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동부권주거복지지사 051-460-6900~1
· 인터넷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26. 08. 10



부산울산지역본부 동부권주거복지지사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지작업,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권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조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도시자금 대출정보 보유기관	주택도시자금 대출 검색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